KMA 대한의사협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

(우)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8F [http://www.kma.org]/전화(02)6350-6548 / 전송(02)790-8911
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6574) / 보험팀장 손용석(6571) / 팀원 이연주(6548) / email: kma6350@naver.com

문서번호 대의협 제813-13682호

시행일자 2019. 2. 7.

수 신 각시도의사회장, 각전문과목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

참 조

제 목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관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303호 (2019.1.18.)

3. 위호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적정청구 풍토 조성을 통한 보험급여 관리를 위하여 요양기관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대표자 부재기간 중 착오청구', '가입자 단기 출국 기간 중 진료비 청구'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추진 결과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착오 청구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요양기관 협조사항	근거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 중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하였을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건강보험법 제43조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의료법시행규칙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 신고)
약사가 입원·해외출장 중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경우	약사가 입원·해외출장 중인 경우 근무약사의 인적사항을 심평원에 신고	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약사법 21조(약국의 관리의

		무), 약사법 23조(의약품 조제)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만을 발급받는 경우	재진 진찰료 소정점수의 50% 산정(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하여 청구)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